##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06 발의연월일: 2023. 8. 8

발 의 자: 김철민·서동용·박 정

민형배 • 이병훈 • 이정문

윤후덕 • 도종환 • 고영인

안민석ㆍ허 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교 원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이러한 침해행위로부터 교육활동과 교원을 보호하거나 구제할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이 큰 상황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교

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15조제6항 및 제19조제3항 신설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 제목 중 "조치"를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절차"를 "절차와 제6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지원"으로 한다.

⑥ 관할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
	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한 <u>조치</u> ) ① ~ ⑤ (생 략)	한 <u>조치 등</u> ) ① ~ ⑤ (현행
	과 같음)
<u>&lt;신 설&gt;</u>	⑥ 관할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
	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
	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
	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	<u>⑦</u>
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u>절차</u>	<u>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와 제6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
으로 정한다.	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지원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② (생 략) <u><신 설></u>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 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 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